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동부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 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 1 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 1 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동부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Dongbu.am.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2.9.17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9.19**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 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 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차]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4
3. 모집예정금액	4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4
5. 인수에 관한 사항	5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5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6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7
4. 집합투자업자	7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8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1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2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4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7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8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0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4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7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2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2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4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6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36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0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40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41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8646
A	69002
C1	68679
C-I	92453
C-E	74886
C-F	72295
C-H	75158
C2	95855
C3	95856
C4	95857
C5	95858
B	A224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dongbua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1)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

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8646
A	69002
C1	68679
C-I	92453
C-E	74886
C-F	72295
C-H	75158
C2	95855
C3	95856
C4	95857
C5	95858
B	A224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6.7.21	최초 설정
2007. 5. 9	종류형 펀드로 신탁계약변경
2007.10.11	신탁계약변경(Class C-E, C-H 추가)
2007.12.27	신탁계약변경(투자대상 추가)
2008.5.6	신탁계약변경(투자대상 추가-주식선물 추가)
2008.10.23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관련 신탁계약변경
200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변경) - 투자신탁명 변경 : 동부TheClassic진주찾기주식투자신탁 제1호 => 동부TheClassic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009.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명 변경 : 동부TheClassic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동부더클래식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변경
2010.2.12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2010.3.24	- 집합투자규약 변경(Class C2수익증권 가입자격 추가 및 판매보수 인하)
2010.4.2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0.5.3	- 집합투자규약 변경(판매보수 인하)
2010.8.19	- 집합투자규약 변경(클래스명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2010.9.29	- 집합투자규약 변경(투자신탁명 변경 : 동부더클래식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

	호[주식]->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010.10.18	- 집합투자규약 변경(CDSC 적용 및 일부 클래스의 판매보수 정률식 인하)
2010.12.28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전용클래스 소득공제요건 일부 수정
2011.4.1	- 집합투자규약 변경(클래스 추가 : Class B)
2011.9.26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개선, 위험등급 상세설명 일부 추가
2012.8.2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개선(기업공시서식 변경 사항 반영)
2012.9.19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개정 반영 :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수시공시) -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2.02.22)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동부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14 신송센터빌딩 19층(대표전화: 02-787-37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2.9.14 기준)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기호삼	1968년	책임운용전문인력	6	1,248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02~07.7 대한투자신탁 - 07.07~11.4 하나 UBS 자산운용 - 11.4~ 동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김한성	1973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12~02.04 부국증권 기업분석 - 02.04~04.07 서울증권 기업분석 - 04.07~05.08 CJ 인터넷 IR - 05.08~07.11 교보증권 기업분석 - 07.11~12.09 유진자산운용 주식운용 - 12.09~ 동부자산운용 리서치팀장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리서치팀의 팀운용입니다.

- “책임운용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홍현기	2006.7.21~2010.4.26
이준혁	2010.4.27~2012.8.26
기호삼	2012.8.27~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A	C1	C2	C3	C4	C5	C1	C-F	B
가입자격	제한없음	C1를 1년 이상 보유	C2를 1년 이상 보유	C3를 1년 이상 보유	C4를 1년 이상 보유	납입금액 50억이상, 보험 업법상 특별 계정, 법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투자자	Fund/ Wrap	제한없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의 1%	-	-	-	-	-	-	-	-
후취 판매수수료	-	-	-	-	-	-	-	-	환매금액의 1.0% 이내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투자신탁보수(연간, %)									
집합투자업자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판매회사	0.7200	1.5000	1.3800	1.2500	1.1300	1.0000	0.0400	0.0000	0.7500
신탁업자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사무관리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종류	C-E					C-H				
가입자격	인터넷가입투자자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대상자				
선취 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투자신탁보수(연간, %)										
집합투자업자	0.7325					0.7325				
판매회사	최초설정일 ~ 2010.10.17	2010.10.18	2011.10.18	2012.10.18	2013.10.18	최초설정일 ~ 2010.10.17	2010.10.18	2011.10.18	2012.10.18	2013.10.18
	2011.10.17	~	~	~	~	2011.10.17	~	~	~	~
신탁업자	1.52	1.34	1.16	0.98	0.8	1.62	1.47	1.32	1.17	1.0
사무관리	0.030					0.030				
	0.0175					0.0175				

*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국내주식 중 가치주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로서 PBR(주가순자산 비율) 및 ROE(주가수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가치주) 가. 동일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주당순자산) 대비 높은 ROE(주가수익,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나. 동일 ROE(주가수익,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대비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주당순자산) 다만, 가치주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하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② 채권	35%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 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 국채선물등에 투자하여 헛지목적 또는 헛지외의 목적으로 투자함)
⑥ 금리스왑 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⑦ 집합투자 증권 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⑧ 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	30% 이하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⑨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⑨	증권 대여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5%이하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 권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월간
거래 상대방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동일종목투자의 한도,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KOSPI x 95% + Call x 5% 입니다. KOSPI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여 주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비교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은 동부자산운용 홈페이지(www.dongbuam.co.kr)에서 확인가능)

(1) 동부자산운용 애널리스트의 역량 집중

- 섹터 애널리스트에 의한 책임리서치 체제 구축으로 유망종목 발굴에 주력
-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통해 저평가 소외주 적극적 발굴

(2) 가치주 장기투자 전략

- PBR&ROE를 기준으로 선정된 가치주에 대해 주식투자비중의 60% 이상 유지
-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우량주 장기보유

(3) 포트폴리오 구성

- 균등분할투자 개념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단, 시가총액, 저평가 정도 등을 감안해 편입비 조정 가능
- 중소형 종목에 대한 투자비중 30% 이상 유지
-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
 - 종목별 목표주가 도달시 분할 매도

- 회사의 고유경쟁력, 업황 등 펀더멘탈 변동시 즉각 교체

(4) 위험관리

- 주식편입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만큼 종목별 마이너스 수익률 진행 정도에 대해 구간별로 관리할 예정
- 특정 섹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자체로 섹터간 위험관리 진행.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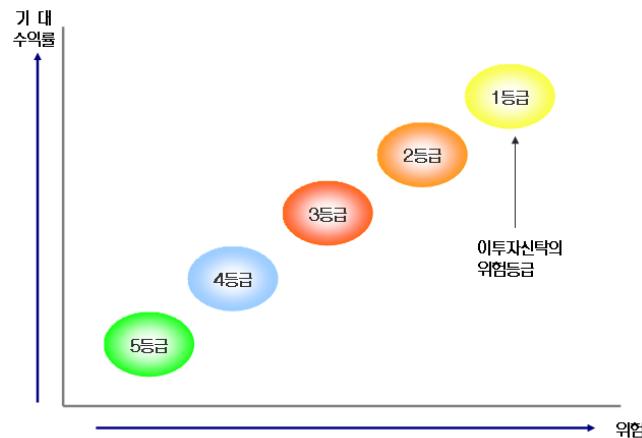
다. 기타위험

환매에 따른 위험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 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 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20%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포함)에 주로 투자 -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60%이상 투자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초과 ~ 60%미만 투자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포함)에 주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30%이상~60%미만 투자 - 부동산실물(상가 등)에 투자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에 주로 투자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포함)에 주로 투자 - 부동산PF, 선박, 특별자산 등에 주로 투자 - 장내차익거래용 증권(파생형) 집합투자기구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등급이 위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운용전략상 해지 등의 방법으로 투자 위험을 축소시켜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위험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어음)에 60%이상 투자 - 회사채(어음)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60%이상 투자
5등급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 국공채에 60%이상 투자 - 국공채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60%이상 투자

* 이러한 위험등급은 당사에서 예시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lass C1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lass C2	Class C1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3	Class C2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4	Class C3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5	Class C4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I	납입금액 50억이상 가입자,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Class C-F	집합투자기구 및 Wrap계좌 전용
Class C-E	인터넷 가입 투자자 전용
Class C-H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자 전용
Class B	가입제한 없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3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3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5시(오후 3시) 이전에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15시(오후 3시) 경과후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3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3 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4 영업일
15시(오후 3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지급시기
	A	C1	C2	C3	C4	C5	C1	C-E	C-F	C-H	B	
환매수수료(보유 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5시[오후 3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 (1)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1 클래스에 한합니다.
- (2)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
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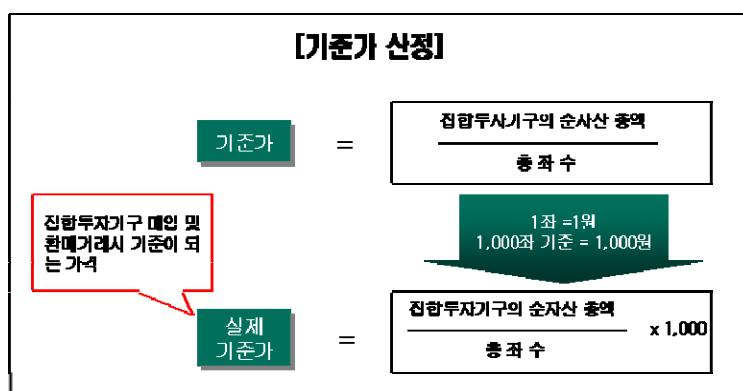
- (3)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4)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5)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6) 기준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 ① 위 전환방법의 (1)에 불구하고 2010년 10월 18일에 종류 C1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부터 종류 C5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 ② 위 ①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 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개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ongbuam.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평균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A	C1	C2	C3	C4	C5	C1	C-E	C-F	C-H	B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	-	-	-	-	-	-	-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	-	-	-	-	-	-	판매금액의 1.0%이내	판매시	
환매수수료(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판매시

*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연간, %,)	비고
----	----------------------	----

	A	C1	C2	C3	C4	C5	C-I	C-F	B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매 3개월 후금
판매회사	0.72	1.5	1.38	1.25	1.13	1.0	0.04	0.0	0.75	
신탁업자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일반사무관리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기타비용 ^(주)	0.0058	0.006	0.0059	0.0056	0.0069	0.0054	0.0057	0.0056	0.0055	
총 보수비용 비율 TER ^(주)	1.5058	2.286	2.1659	2.0356	1.9169	1.7854	0.8257	0.7856	1.5355	
증권거래비용 ^(주)	0.5506	0.4888	0.5926	0.5277	0.6727	0.5185	0.5386	0.5382	0.4569	사유발생시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연간, %,)									
	C-E					C-H				
집합투자업자	0.7325					0.7325				
판매회사	최초설정일 ~2010.10.17	2010.10.18 2011.10.17	2011.10.18 ~ 2012.10.17	2012.10.18 ~ 2013.10.17	2013.10. 18~	최초설정일 ~2010.10.17	2010.10.18 2011.10.17	2011.10.18 ~ 2012.10.17	2012.10.18 ~ 2013.10.17	2013.10. 18~
	1.52	1.34	1.16	0.98	0.8	1.62	1.47	1.32	1.17	1.0
신탁업자	0.03					0.03				
일반사무관리	0.0175					0.0175				
기타비용 ^(주)	0.0057					0.0057				
총보수비용 비율 TER ^(주)	-	-	1.9457	-	-	-	-	2.1057	-	-
증권거래비용 ^(주)	0.5424					0.5402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 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1.7.21~2012.7.20**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비용 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비율(TER)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

주3) 증권거래비용은 **2011.7.21~2012.7.20**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단위:원)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Class A	251,802	580,689	943,286	2,020,820
C1 가입자로 자동전환시	234,281	714,467	1,175,334	2,497,401
Class C-E	199,408	628,636	1,101,859	2,508,141
Class C-F	80,516	253,827	444,903	1,012,726
Class C-H	215,802	680,317	1,192,445	2,714,342
Class C-I	84,623	266,774	467,596	1,064,380

Class B	157,369	496,108	869,568	1,979,381
---------	---------	---------	---------	-----------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Class B의 경우 후취판매 수수료는 환매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기 비용예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 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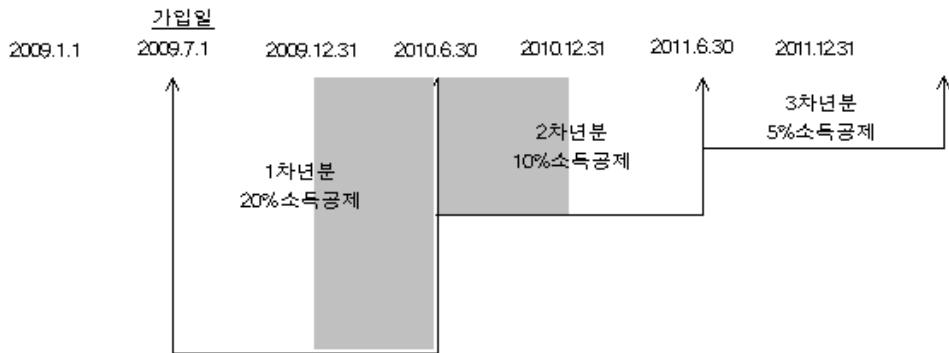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의 세제우대: 배당소득(농특세포함) 비과세 및 소득공제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의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 : 기존 적립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신규 가입자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금융기관의 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 소득공제 예시 : 투자자 A가 2009.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 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10%
-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5) 기타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전용 Class(Class C-H) 세제혜택

만 18 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 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 9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51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 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입니다

① 가입자격

가입대상	만 18 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
세제 혜택	- 7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연간 불입액의 40%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단, 소득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2호 ¹⁾ 의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하이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비과세 요건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해 비과세 요건 부여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단, 전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의 합계금액 기준)

1) 소득세법 제 52조 제2항 제2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세제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p>(1)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이자의 인출이 없는 경우</p> <p>(2)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해당됨</p> <p>* 단,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이자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p> <p>*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근로소득 공제	<p>공제대상 :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에 대해서 연말정산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이 경우 주택자금대출과 합산하여 산정함.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p> <p>세액 추징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 저축납입액의 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8%)에 상당하는 금액 -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추징함. 단, 저축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 추징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 투자신탁을 이용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세제 혜택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저축대상: 금융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등
- 통장표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
- 가입대상: 만 18 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불입금액: 분기당 300만원 이내
- 계약기간: 7년 이상
- 계약유지: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서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6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재무정보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120720	20110720	20100720
I. 운용자산	113,743,692,350	96,671,663,458	54,167,592,266
증권	107,430,386,165	94,940,862,475	51,962,434,640
현금 및 예치금	6,313,306,185	1,730,800,983	2,205,157,626
II. 기타자산	605,378,505	24,540,430,891	345,600,710
자산총계	114,349,070,855	121,212,094,349	54,513,192,976
III. 기타부채	549,419,370	11,768,711,433	1,000,690,121
부채총계	549,419,370	11,768,711,433	1,000,690,121
I. 원본	133,521,989,636	85,538,982,981	51,286,521,363
II. 수익조정금	-4,101,092,536	6,876,426,869	90,805,622
III. 이익잉여금	-15,621,245,615	17,027,973,066	2,135,175,870
자본총계	113,799,651,485	109,443,382,916	53,512,502,855
I. 운용수익	-14,322,579,664	18,096,696,426	13,956,508,989
이자수익	100,951,541	84,295,493	41,867,600
배당수익	1,031,671,423	955,985,415	617,666,755
매매/평가차익(손)	-15,544,888,029	17,023,510,093	13,268,731,788
기타이익	89,685,401	32,905,425	28,242,846
II. 운용비용	1,298,665,951	1,052,474,776	1,052,888,417
관련회사보수	1,291,211,497	1,046,417,958	1,048,271,258
기타비용	7,454,454	6,056,818	4,617,159
III. 당기 순이익	-15,621,245,615	17,044,221,650	12,903,620,572
* 매매회전율	250	333	308
* 매매수수료	626,108,285	665,459,478	484,575,55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1) 운용펀드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9.7.21~2010.7.20	58,771	58,771	18,746	21,241	34,356	40,237	43,161	39,775	-	-
2010.7.21~2011.7.20	43,161	43,161	83,653	98,682	52,464	60,616	84,770	91,647	10,420	10,420
2011.7.21~2012.7.20	84,770	84,770	99,069	92,802	51,451	49,141	132,388	128,432	-	-

(2) Class A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9.7.21~2010.7.20	52,106	52,106	13,255	13,174	30,159	30,177	35,202	35,103	-	-
2010.7.21~2011.7.20	35,202	35,202	12,625	14,368	21,695	24,418	28,012	27,031	1,879	1,879
2011.7.21~2012.7.20	28,012	28,012	14,961	13,543	15,154	14,065	35,549	35,220	7,730	7,730

(3) Class C1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9.7.21~2010.7.20	19,696	19,696	2,927	2,807	8,807	8,525	13,816	13,978	-	-
2010.7.21~2011.7.20	13,816	13,816	1,116	1,224	14,915	16,307	332	-951	316	316
2011.7.21~2012.7.20	332	332	1,985	1,776	696	617	1,710	1,580	89	89

(4) Class C-I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0.4.7~2010.7.20	-	-	962	967	-	-	962	967	-	-
2010.7.21~2011.7.20	962	962	55,700	66,620	8,985	11,436	47,704	56,173	27	27
2011.7.21~2012.7.20	47,704	47,704	48,652	44,530	24,636	24,177	85,286	81,623	13,567	13,567

(5) Class C-F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9.7.21~2010.7.20	50	50	-	-	50	51	-	-2	-	-
2010.7.21~2011.7.20	-	-	232	229	-	-	232	229	-	-
2011.7.21~2012.7.20	232	232	60	50	16	15	302	294	26	26

(6) Class C-E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9.7.21~2010.7.20	1,272	1,272	620	574	875	804	1,018	1,043	-	-
2010.7.21~2011.7.20	1,018	1,018	317	353	569	632	766	739	-	-

2011.7.21~2012.7.20	766	766	432	391	244	224	1,143	1,122	190	190
---------------------	-----	-----	-----	-----	-----	-----	-------	-------	-----	-----

(7) Class C-H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2009.7.21~2010.7.20	192	192	127	125	29	29	290	289	-	
2010.7.21~2011.7.20	290	290	104	117	45	52	364	370	14	14
2011.7.21~2012.7.20	364	364	130	116	47	44	543	534	97	97

(8) Class C2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2010.10.18~2011.7.20	0	0	2,197	2,495	1,040	1,204	1,156	1,291	-	--
2011.7.21~2012.7.20	1,156	1,156	1,179	1,049	1,947	1,792	698	723	310	310

(9) Class C3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2010.10.18~2011.7.20	0	0	3,062	3,433	2,092	2,420	969	1,014	-	-
2011.7.21~2012.7.20	969	969	2,050	1,876	1,726	1,571	1,554	1,535	261	261

(10) Class C4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2010.10.18~2011.7.20	0	0	8,041	8,969	3,986	4,710	4,055	4,259	-	-
2011.7.21~2012.7.20	4,055	4,055	1,459	1,318	5,985	5,453	625	1,016	1,096	1,096

(11) Class C5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2010.10.18~2011.7.20	0	0	1,996	2,316	48	57	1,947	2,259	-	-
2011.7.21~2012.7.20	1,947	1,947	5,409	4,913	1,776	1,616	6,109	5,773	528	528

(12) Class B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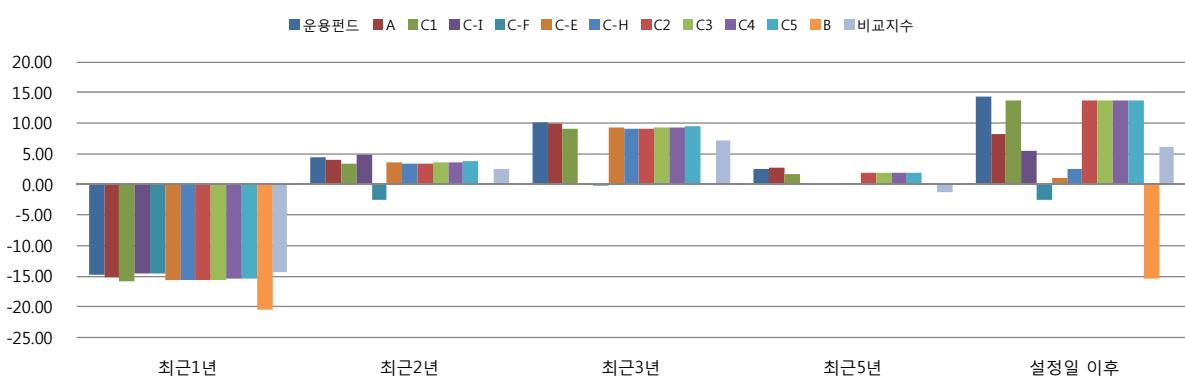
2011.4.18~2011.7.20	0	0	1	1	0	0	1	1	-	-
2011.7.21~2012.7.20	1	1	5	5	6	5	0	1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전자 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교지수는 KOSPI*95% + Call * 5%로서,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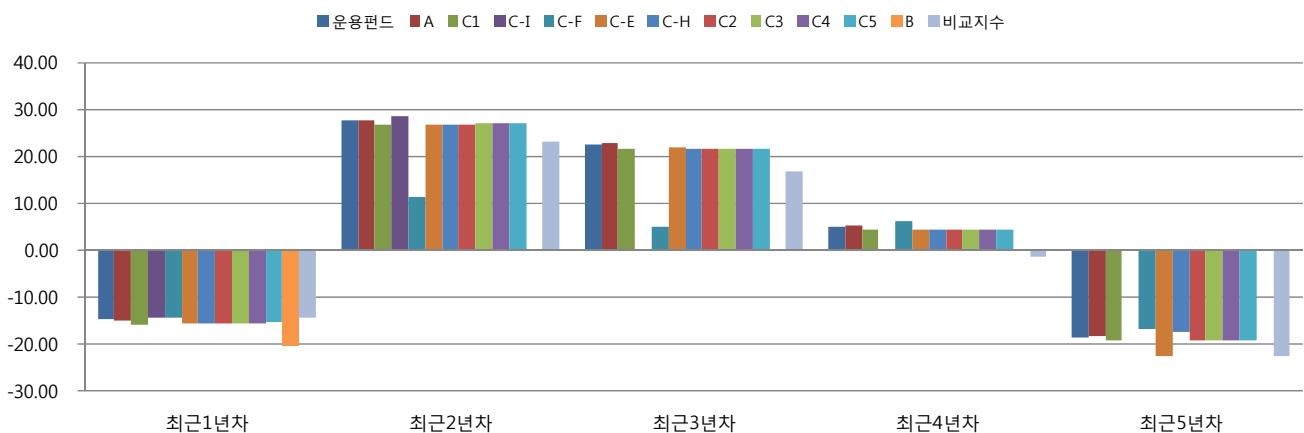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 :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냄

연도	최근 1년 2011.07.21 ~ 2012.07.20	최근 2년 2010.07.21 ~ 2012.07.20	최근 3년 2009.07.21 ~ 2012.07.20	최근 5년 2007.07.21 ~ 2012.07.20	설정일 이후 2006.07.21 ~ 2012.07.20
운용펀드	-14.78	4.34	10.03	2.58	14.37
A	-15.11	4.09	9.96	2.68	8.14
C1	-15.78	3.31	9.07	1.77	13.61
C-I	-14.53	4.78			5.44
C-F	-14.49	-2.46	-0.01		-2.52
C-E	-15.53	3.51	9.27		1.11
C-H	-15.66	3.37	9.13		2.45
C2	-15.68	3.40	9.14	1.81	13.64
C3	-15.57	3.52	9.22	1.86	13.68
C4	-15.46	3.63	9.30	1.90	13.72
C5	-15.35	3.74	9.38	1.94	13.76
B	-20.46				-15.48
비교지수	-14.42	2.59	7.10	-1.27	6.18



나. 연도별 수익률 :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 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연도	최근 1년차 2011.07.21 ~ 2012.07.20	최근 2년차 2010.07.21 ~ 2011.07.20	최근 3년차 2009.07.21 ~ 2010.07.20	최근 4년차 2008.07.21 ~ 2009.07.20	최근 5년차 2007.07.21 ~ 2008.07.20
운용펀드	-14.78	27.75	22.38	4.98	-18.77
A	-15.11	27.63	22.70	5.29	-18.45
C1	-15.78	26.72	21.58	4.25	-19.30
C-I	-14.53	28.44			
C-F	-14.49	11.27	5.07	6.05	-16.89
C-E	-15.53	26.83	21.76	4.46	-22.63
C-H	-15.66	26.69	21.64	4.36	-17.29
C2	-15.68	26.80	21.58	4.25	-19.30
C3	-15.57	26.93	21.58	4.25	-19.30
C4	-15.46	27.03	21.58	4.25	-19.30
C5	-15.35	27.14	21.58	4.25	-19.30
B	-20.46				
비교지수	-14.42	22.98	16.72	-1.43	-2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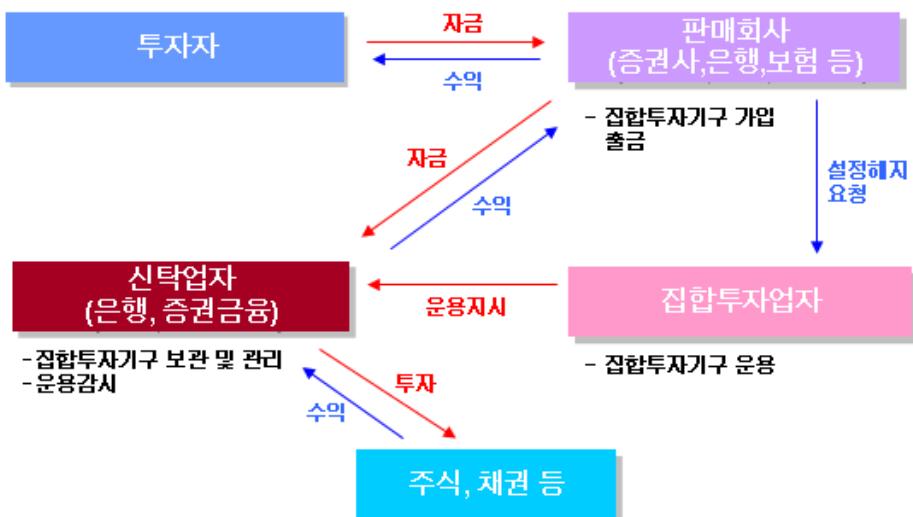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2012.7.20 기준)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한국 원	107,430 (93.95)	0 (0.00)	6,315 (5.52)	603 (0.53)	114,349 (100.00)				
합계	107,430 (93.95)	0 (0.00)	6,315 (5.52)	603 (0.53)	114,349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동부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14 (02-787-3700)	www.dongbuam.co.kr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

과 목	제 16 기	제 15 기
	(2012.3.31)	(2011.3.31)
자 산 총 계	38,899	39,648
I. 현금및예치금	9,832	20,038
II. 매도가능금융자산	20,451	10,618
III. 대출채권	281	298
IV. 유형자산	197	217
V. 기타자산	8,138	8,477
부채 총계	629	1,059
I. 기타부채	629	1,059
자 본 총 계	38,270	38,588
I. 자본금	30,000	30,000
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9	47
III. 이익잉여금	8,201	8,541
부채와자본총계	38,899	39,648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

과 목	제 16 기	제 15 기
	(2012.3.31)	(2011.3.31)
I. 영업수익	13,519	14,708
II. 영업비용	11,281	11,555
III. 영업이익	2,238	3,153
IV. 영업외수익	-	10
V. 영업외 비용	197	27
V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041	3,136
VII.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581	893
VIII. 당기순이익	1,460	2,243

라. 운용자산규모(2012. 9. 14 기준 / 억)

구분	주식	혼합	채권	MMF	파생	재간접	특별자산	부동산	합계
수탁고	6,286	3,013	8,407	34,839	8,867	653	4,521	2,228	68,81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02-2002-3000)	www.wooribank.com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사무관리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HSBC펀드서비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02-3771-9834)

(2)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2) 주요 업무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폐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④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 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조 제 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 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 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판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판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ongbua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판매연기 또는 판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p>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p>②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p>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투자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고객보관용)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게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四三

-----[판매 직원 성명]-----[서명]-----[고객 성명]-----[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고객 확인 사항	고객 기재 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 손실 예상 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음)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